- 2021년 법인세 성실신고를 도와드리는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 유의사항

- 1. 본 자료는 법인세 신고안내를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 법인세 신고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 본 자료는 정기 신고사항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정신고, 고지 등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 법인세 신고 및 신고안내 자료에 대한 문의처
 - 동고양세무서 재산법인세과 법인팀 김보성 (☎ 031-900-6404)

주요안내

1. 법인 기본사항

사업자등록번호: 128-87-062**

법 인 명	(주****	대표자	조***	
법인구분	내국법인	· 사업연도	2020.01.01	
법인종류	영리 기타 중소법인	사립한도	2020.12.31	중소영리법인
업 태	도매 및 소매업	주업종코드	519113	
세금포인트	4,646.00	종 목	상품 종합 도매업	

* 전년도에 신고한 기본사항입니다. 주업종코드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지표 비교분석 ((주*****)

주요지표	소득률	영업이익률	주요경비율	원가율	인건비비율
자체율(%)	3.6	3.8	11.2	85.0	7.5
평균율(%)	5.6	5.0	81.5	13.5	5.5

<종합분석>소득률과 영업이익률이 동종업종 평균보다 낮은 반면, 원가율과 인건비 비율이 동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원가 등 비용 절감요소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 평균율은 동종업종 영위 법인 중 수입금액 100~300억원구간 법인의 평균입니다.

3. 이건 꼭 알아두세요!

<신고시 유의사항>

특정 항목의 신용카드 사용 액이 있는 법인의 신고 시 유의사항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세무조사나 신고내용 확인 시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추징되는 주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귀 법인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 중 이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려드리니 업무 관련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신변잡화 구입 추정액:백만원 2. 가정용품 구입 추정액:2백만원 3. 업무무관업소 이용 추정액:21백만원 4. 개인적 치료 추정 비용:백만원 5. 해외사용액:백만원

<신고시 유의사항>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하는 분부터는 업무전용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미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임차한 승용차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
가입 법인의 신고 시 유의	이 30일 이내인 승용차는 제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니 신
사항	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사업연도 신고사항 중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 수 :1대

<신고시 유의사항>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Ξ
중 취득·처분한 법인의 신	I
고 시 유의사항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액(1대당 최대 800만원) 및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한도액(1대당 최대 1,500만원)을 보유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야 하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기본사항

1. 연도별 신고상황

(단위:백만원)

구분		2019사업연도	2018사업연도	2017사업연도
수입금액		11,249	12,988	12,900
당기순손익		280	440	461
각사업연도 소	득금액	410	568	553
과세표준금액		410	568	553
산출세액		62	94	91
공제감면세액		0	0	0
총부담세액		62	94	91
소득률	당해업체(%)	3.6	4.3	4.3
고극팔	업종평균(%)	5.6	5.5	5.5
메ᄎᄎ이이르	당해업체(%)	15.0	15.0	13.7
매출총이익률	업종평균(%)	18.5	18.2	15.6
010101 2	당해업체(%)	3.8	3.9	3.7
영업이익률	업종평균(%)	5.0	4.8	4.3

- * 과거연도에 정기신고한 내용이며, 신고 이후 수정신고, 경정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 소득률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수입금액 [법인세 신고 기준] 매출총이익률 = 매출총이익 / 매출액,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매출액 [손익계산서 기준]

2. 참고할 신고자료

(1)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 백만원)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i>-</i> 와에기간	과세	면세	과세	면세
2020.17	5,840	0	5,242	1
2020.27	6,679	0	5,905	2

^{*}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으로 수정신고, 고지 등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2) 2020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 30,890,823 원 (원단위 절사)

* 가산세 제외 금액으로 기한후 신고, 결정 • 경정내역이 반영된 자료입니다.

(3)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 총 0 백만원

(단위:원)

보조금 수취법인		집행기관		교부자금명	지급금액
사업자번호	법인명	사업자번호	부서명	一	시ㅂㅁㅋ

(4) 2019.12.31. 결산법인 주주현황

(단위: 주,%)

구분	사업연도 (종료일)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주식수	지분율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	지배주주와의 관계
1	2019.12.31	조***	670210-*****	58,074	56.940	00	본인
2	2019.12.31	0 ***	720114-*****	22,400	21.960	09	기타
3	2019.12.31	조***	960802-*****	8,213	8.050	02	자
4	2019.12.31	조***	960802-*****	8,213	8.050	02	자
5	2019.12.31	최***	670407-*****	5,100	5.000	01	배우자

- 1) 주요주주 5인만 화면에 표시되며, 우측 상단의 '전체 주주현황 내려받기'를 이용하시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전부가 표시된 전체 주주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주주현황은 신고도움 참고자료이며, 2019.12.31. 결산법인에 대해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Ⅱ. 기업분석자료

1. 표준손익계산서 매출액 대비 주요 판매관리비 현황(2019사업연도)

(단위:백만원,%)

구 분	금액	당해업체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율	업종평균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율
복리후생비	56	0.5	0.7
접대비	43	0.4	0.3
 차량유지비	18	0.2	0.2
지급수수료	38	0.3	2.9
외주용역비	76	0.7	1.3
기타판관비	1	0.0	1.5

*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유지비용(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은 일정 요건에 따라 비용인정 기준이 마련되었으므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여부, 업무 사용비율, 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5년 정액법 균등 강제상각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특정 용도의 신용카드 사용현황(2020년 사용금액)

해외사용액 신변잡화 구입 업무무관 업소이용 개인적 가정용품 합계 구입 치료 2019 2020 총사용액 총사용액 23 0 1 20 0 0

- * 2020년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업무와 관련이 적은 것으로 전산분석된 자료로써, 실제 법인의 지출용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신변잡화·가정용품 구입: 의료용 기구, 화장품, 예술품 등 구입액 업무무관 업소 이용: 스포츠 교육기관, 수의업, 오락장 등 사용액 개인적 치료: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사용액

3. 지출증빙 수취현황

(단위 : 백만원)

(단위: 백만원)

①수취대상금액	②증빙수취금액	③차이금액	증빙수취비율(②/①) (%)
0	0	0	0.0

- * 2019 사업연도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지출증빙 수취내용을 분석한 자료이며, 증빙수취 제외대상, 증빙수취 시기 등으로 인해 다소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수취대상금액(법인세법 §116의 지출증빙 수취대상이 되는 거래금액)은 손익계산서, 원가 명세서 등의 수취대상 계정과목의 합계액이며, 증빙수취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수취금액, 매입계산서 합계표 금액,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금액 등의 합계액 입니다.
- 수취대상계정과목 예시: 당기매입원가, 임차료,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수주비, 지급수수료, 판매수수료, 소모품비, 통신비, 운반비, 보관료, 건물·시설관리비, 수선비, 수도광열비, 전기료, 인쇄비, 외주용역비, 기타판관비, 당기 재료매입액, 외주비, 전력비, 가스·수도·유류비, 운임, 수선비, 소모품비, 임차료, 통신비, 차량유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사용료, 포장비, 중장비유지비, 하자보수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인쇄비, 보관료 등

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등

(단위:백만원)

기 간	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신용카드 등 매출 전표금액(공급대가)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공급대가)
2020년	13,406	12,518	888	0

- * 위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매출액보다 큰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신용카드결제대행금액 + 선불전자 지급금액 (구매전용카드 제외)

Ⅲ. 신고시 유의사항

1. 법인별 유의사항

(단위:백만원,건,명,%)

안내사항	안내내용
------	------

특정 항목의 신용카드 사 용액이 있는 법인의 신고 시 유의사항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세무조사나 신고내용 확인 시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추징되는 주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귀 법인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 중 이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려드리니 업무 관련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신변잡화 구입 추정액:백만원 2. 가정용품 구입 추정액:2백만원 3. 업무무관업소 이용 추정액:21백만원 4. 개인적 치료 추정 비용:백만원 5. 해외사용액:백만원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미 가입 법인의 신고 시 유의 사항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하는 분부터는 업무전용자 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임차한 승용차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는 제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사업연도 신고사항 중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 량 수 :1대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 취득·처분한 법인의 신 고 시 유의사항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액(1대당 최대 800만원) 및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한도액(1대당 최대 1,500만원)을 보유기 간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야 하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업종별 유의사항

안내사항	안내내용
상품 종합 도매업을 영위 하는 법인이 신고 시 유의 사항	대표이사나 임직원 명의로 상품중개수수료를 지급받고 수입금액을 누락하지 않았는지 여부 고정 거래처에 대하여 타 거래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할인한 경우 접대비시부인 계산 적용 여부 대표이사 등의 사적경비와 접대성 경비에 대한 세무조정 적정 여부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된 오퍼수수료에 대한 수입금액 계상 적정 여부기말재고 잔액 확인을 통한 매출원가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

^{*} 직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상 기재된 주업종코드에 의함.

3. 계정과목별 안내내용

계정과목명	안내내용

^{*} 최근 3년간 신고내용을 전산 일괄 분석한 법인별 세무진단 내용으로 개별 법인의 실제 현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IV. 절세 Tip

1. 법인별 절세Tip

안내사항	안내내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안내	귀 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상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안내하오니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 한 세제지원 확대 안내	20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경력단 절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증가한 고용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이 상향되 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험 신규 가입 중소 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안내	2019.1.1. 이후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 중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년간 해당 사회보험료 (사업자부담 사회보험료 총액에서 정부 보조금 등 차감)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업종별 절세Tip

안내사항	안내내용

* 절세 Tip을 신고에 반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령 및 해석사례 등을 검토하여 적용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 세법도우미

1. 참고할 세법규정

안내사항	안내내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법인세법§27의2,법인세 법시행령§50의2④,⑨ 법 인세법시행규칙§27의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임차한 승용차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 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는 제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전액 손금불인정합니다. 다 만, 법령에 따른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중 일부 기간만 업무 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일수 비율에 의하여 손금 여부를 검토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7)	중소기업 중 제조업 등 일정한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감면 업종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5~30%를 감면(최대 1억원 한도)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30의4)	중소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 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에 대한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및 감면액 제외) 상당액의 100%(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시 50%)를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30의4②)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 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 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일정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법인세법§27의2③, 법인 세법시행령§50의2⑦)	사업연도 중 업무용승용차를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로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관련 비용은 10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 누어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2. 주요 개정세법

안내사항	안내 내용
------	-------

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 식 조정 (법인세법시행령§50의2⑪ ,⑬)	○업무용승용차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을 임차종료 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종전에는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산입)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을 처분 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종전에는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산입) ★2020.2.11. 이후 처분(임차계약 종료)한지 10년이 도래한 분부터 적용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대상 추가 (법인세법시행령§50의2①)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27①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 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는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제외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결손보전 시 익금불산입하는 자산수증이익에 국고보 조금 등 제외 (법인세법§18)	ㅇ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서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되, 2010.1.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 각비 부담 완화 (법인세법시행령§31③)	ㅇ즉시 손금산입하는 개별자산별 수선비를 300만원→600만원 미만으로 확대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 형 제외 (법인세법시행령§31⑥)	ㅇ다른 세법규정에서 공구의 범위에 금형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 (법인세법시행령§97의4②)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 *법인세법§51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업 ** 2020.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채권 범위 조정 (법인세법시행령§19의2①)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채권에 추가 *2020.3.13.이후 조정이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
접대비 한도 상향 (법인세법 § 25④, 조세특 례제한법 § 136④	○(기본한도) 중소기업 2,400만원→3,600만원 상향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100억이하: 02%→03% *100억 초과 500억 이하: 2천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1%) → 3천만원+(100억원 초과 분의 0.2%) *500억 초과: 6천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3%) → 1억1천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3%)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2020.1.1. ~ 2020.12.31. 지출한 접대비 는 0.35%, 0.25%, 0.06% 적용)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 인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 비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19)	○내국법인(중소.중견기업에 한정)이 해외현지법인(100% 출자한 법인으로 한정)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손금산입 -내국법인 및 해외법인이 해당 임직원에 지급한 인건비 총액의 5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로 한정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 대 (법인세법시행령§19의2①)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 확대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액채권의 범위를 20만원→30만원 이하로 확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한 것 (다만, 특수관계 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연결법인 기부금 이월액 손금산입된 금액의 각 법 인별 배분방법 보완 (법인세법시행령§120의 20)	○일반법인의 기부금 공제순서 변경에 따라 연결법인 기부금 이월액 배분방법 보완 - 연결납세에 따른 기부금 한도 중 먼저* 손금산입되는 기부금 이월액만큼을 각 법인별로 이월액 비율에 따라 배분 * 기부금 이월액이 당해연도 지출액보다 먼저 공제되므로 당해연도 기부금 지출액 공제 없이 바로 계산 ** 2020.2.11.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정규증명 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 명확화 (법인세법§75의5①)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을 미수취 등 금액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명확화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 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법인세법시행령§10⑴)	ㅇ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은 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소득의 100%로 확대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리스료 손익귀속시기 적용 규정 정비 (법인세법시행규칙§3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법인의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 *2020.3.13.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 (법인세법시행규칙§44)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 등인 직원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 제외대상에 추가하여 중소기업 지원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적용기준 변경 (법인세법§18의2①, §18 의3①)	ㅇ「공정거래법」등관련법률과 요건을 통일시키기 위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시 " 초과"를 "이상"으로, "이하"를 "미만"으로 변경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 (법인세법 § 24⑥)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하도록 개정 * 2020.1.1.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법인세법시행령§50의2⑦)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산입금액을 1,000만원→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납세 협력 부담 완화 *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의3)	○(대상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경력단절여성 인정사유) 결혼, 자녀교육 * 결혼 :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혼 자녀교육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취업요건완화)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 기업으로 확대 * 동종업종 : 표준산업분류상중분류 ○(재취직시기) 퇴직 후 3~15년 이내 재취직 ○(공제율)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 * 2020.1.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24)	○지원대상·지원수준 등이 상이한 9개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하여 신설 - (공제대상) 사업용 유형자산(단, 토지, 건물, 차량 등 일부 제외), 일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대상업종)부동산임대·공급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공제방식)당기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투자 증가분(3%) -(신사업* 투자 우대) 기본공제(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 * 신성장·원 천기술(12대분야, 223개)의 사업화 시설 - (적용시기)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20·2021년 투 자분은 현행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 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 * 2019.1.1. 이후 투자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28의3)	○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75%(대기업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 ○ (대상자산) (i) 중소.중견기업: 사업용 고정자산 -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 (ii) 대기업: 혁신성장 투자자산 -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 (취득기간) '18.7.1.~'19.12.31. * 2018.7.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신성장,원천기술 대상분야 확대 (조세특례제한법§10)	○(공제대상) 신성장동력.원천 기술에 신기술* 추가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 30개 기술 신설, 첨단 소재, 부품, 장비 분야 20개 기술 신설 ○(적용기한) 2021.12.31.까지 연장 *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 종 확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5)	○(감면대상)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 하는 업종*, 물류산업업종** 일부 추가 * 전자금융업,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 ** 수상·항공운송업, 수상·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 포함 * (적용시기) 2020.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 구체화 (조세특례제한법§10, 시 행령§9)	○(배제사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 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② 인정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③ 기업이 인정취소 요청 등 ○(배제시점) 배제사유(①,②,③)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 *(배제사유:① 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②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 일 ③ 인정취소일)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인력개발비 적용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적용범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과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직업교육 훈련과 정·학과 운영비용,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훈련 수당 등 *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5)	○(대상) 상생형 지역일자리 또는 규제자유특구에 투자 * 상생형 지역일자리 : 지역일자리 창울 등을 위해 지자체, 기업, 근로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 규제자유특구 : 수도권 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 ○(공제율)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규제자유특구) 중견기업 3%, 중소기업 5% ○(적용시기) 선정일 또는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2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 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30의2)	○(요건) 2019.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0.1.1.~ 12.31.까지 정규직 전환 ○(공제액) 전환인원×중소기업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 ○(적용기한) 2020.12.31.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기 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99의9)	 ○ 위기지역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에 대한 감면기간 확대 - (지원내용) 5년간 100% →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최저한세) 100% 감면기간은 적용제외, 50% 감면기간은 적용 *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시	○ 감면대상을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까지 확대
세액감면 대상 확대	- (감면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조세특례제한법 §104의	내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24)	★ 2020.3.23. 이후 국내에 사업장을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5~10년)을 10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 경감
(조세특례제한법 § 144)	*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세법도우미를 신고에 반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령 및 해석사례 등의 원본을 검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